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제 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부여·변경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을 정하는 한편,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 등의 부여·변경·폐지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6조)

- 1) 현행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속도로 등의 나들목 및 입체교차로에서 다른 도로와의 연결구간은 종속구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2) 고속도로는 현행 기초간격을 나누는 기준인 20미터의 예외로 2킬로미터 간격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현실을 반영함
- 3) 도로명에는 숫자를 1회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부르기 쉽도록 함

나.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세부기준 등 마련(안 제9조부터 제13조)

- 1) 도로의 중앙 부문에 위치하는 건물등의 건물번호는 해당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양쪽에 인접한 건물등과 구분되도록 함
- 2)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소유자 등에게

고지한 경우 고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판을 제공하도록 기
한을 정하고, 상세주소판 설치 위치는 출입문 또는 출입구로 함

다.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안 제14조부터 제22조)

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외에 「도로명주소대장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개정·시행)이 별도 제정 및 시행되어 오던 것을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함

2) 도로명주소대장의 각종 고시일에 효력발생일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사용 시기를 명확히 함

라. 주소 일괄정정 신청 대상 공부의 확대(안 제23조)

주민이 도로명주소의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의 주소 일괄정정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그 대상 공부를 현행 4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하고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확히 정함

마. 국가지점번호의 검증 방법의 마련(안 제26조 및 제27조)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을 위한 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준점을 사용하고 현장검증의 허용오차는 2미터로 함

바. 사물주소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28조부터 제30조)

1) 사물번호를 부여·변경할 때의 기준은 건물번호 부여 등의 세부기준을 준용하되, 같은 기초간격 내에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에는 중복하여 사물주소를 부여하지 않도록 함

2) 부여·변경한 사물주소는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사.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신청 서식 등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2. “도로명관할구역”이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영 제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3. “건물등관할구역”이란 영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영 제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제3조(건물번호 등의 구성 등) ① 영 제5조제1항제5호의 건물번호는 ‘번’

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② 영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棟)’, ‘호(號)’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제4조(도로구간 설정·변경의 세부기준) ① 법 제7조·제8조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도로구간으로 설정·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장 가능성이 없는 50미터(읍·면 지역은 500미터로 한다) 미만의 도로구간은 종속구간과 함께 관리할 수 있다.

② 영 제7조제2항제7호다목 단서에 따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정하는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한쪽 끝이 하천·강·바다 등으로 막혀 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길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지역의 중심축을 이루는 도로의 방향으로 해야 하는 경우
3. 로(路) 또는 길인 도로구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분기점을 시작지점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4. 길인 도로구간을 인근에 있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도로 방향과 일치시키려는 경우

5.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인 경우

6. 제6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③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1. 도로구간의 끝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도로구간의 끝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끝지점으로 변경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새로운 도로구간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이를 종속구간과 함께 관리한다.

나.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을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으로 변경한다.

3.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아닌 지점에서 도로의 선형(線形)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

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면서 새로 연결되는 부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가.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기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함께 관리한다.

나. 새로 연결되는 부분과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모두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다.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도로구간을 유지하고, 새로 연결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함께 관리한다.

라. 새로 연결되는 부분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새로 연결되는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을 연결하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종속구간과 함께 관리한다.

4.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 부분의 도로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는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을 변경한다.

5.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아닌 부분에서 도로의 일부가 폐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설정·변경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폐지된 부분의 도로구간을 가상의 구간으로 유지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변경·설정할 수 있다.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도로구간의 기초번호가 유지되도록 끝지점을 변경한다.

나. 도로구간의 끝지점이 있는 도로 부분은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6.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등에 설치되는 나들목, 입체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로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도로의 연결구간은 주된 도로의 종속구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종속구간 설정 범위 이내의 길이로 시·군·구 행정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간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1. 시·군·구의 경계가 두 번 이상 교차하는 경우 : 교차하는 구역의 중간 지점에 가까운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
2. 도로를 따라 시·군·구의 행정 구역 경계가 나누어진 경우 : 낮은 기초번호의 부여가 예상되는 도로구간과 행정구역 경계의 교차점
3. 두 개의 주된 구간을 연결하는 종속구간에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

⑤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영 제7조제

3항 단서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1. 하천, 강, 바다, 다리,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地形地物)
2.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나들목
3.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 경계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계

제5조(기초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20미터의 기초간격마다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초간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10미터 간격

가.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

나.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2.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 :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

3. 2킬로미터 간격: 고속도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내부통로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개수를 고려하여 기초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종속구간의 기초번호는 주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부여한다. 이 경우 가지번호는 시작지점부터 차례로 왼쪽 종속구간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종속구간은 짝수번호를 부여한다.

제6조(도로명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만으로 도로의 위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로와 로(路)에는 방위 등을 사용한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 길에는 숫자나 방위 등을 사용한 다음 각 목의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가.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영 제6조제2항제1호다목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分岐)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과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

나.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영 제6조제2항제1호다목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과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

다. 복합명사방식 도로명: 주된 명사에 동, 서, 남, 북 의 방위 등을 붙여 부여한 도로명

2.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존 도로명을 사용한다.

3. 도로명에 숫자를 포함할 때에는 1회에 한한다.
4. 도로명을 부여할 때 마을 이름, 유적 및 문화재의 이름, 도로의 위치와 기능 및 시·군·구 이상의 권역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공공시설물의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다.
5. 도로명은 한글로 표기하되, 아라비아숫자와 온점(.)을 포함할 수 있다.
6. 도로명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른다.
7.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을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가. 대로(大路): Blvd

나. 로(路): St

다. 길(街): Rd

제7조(도로명의 부여·변경 신청)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의 전단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도로명 부여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④ 영 제9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명의 부여 신청은 제2항의 도로명 변경 신청을 따른다. 이 경우 현재의 도로

명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8조(명예도로명의 관리) 영 22조제3항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도로명 부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건물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23조제7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물등이 있으면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의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등부터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한다. 다만, 이미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이 분리·통합되거나 주된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지 않으면서 각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있으면 가지번호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접한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거나 변경한다.
3. 건물등의 출입구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으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거나 변경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르게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여·변경할 수 있다.

가. 대로·로(路)·길에 접한 경우에는 대로·로(路)·길의 순서
나.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

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4. 도로·하천 등의 위에 설치된 건물등은 주된 출입구가 인접한 진행 방향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한다.
 5. 건물등이 도로의 왼쪽 또는 오른쪽이 아닌 중앙 부문에 위치하는 경우 주된 출입구가 인접하는 진행방향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한다.
 6. 건물등의 출입구가 여러 개 있으면 해당 기초번호의 중간 값의 기초번호 또는 첫 번째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7.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공동주택 등이 단지 내 도로가 아닌 통과도로에 의해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된 출입구가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변경할 수 있다.
 8. 공동주택 등에 포함된 상가 등은 개별 건축물로 보아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9.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건물등에는 진입도로와 만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건물등의 신축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가지번호를 붙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10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에 설치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설계도서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을 반영하여 건물등의 신축·증축 등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 및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물번호 부여 등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상세주소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 등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건물군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동번호는 건물군 안 건물등의 순서를 알 수 있도록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건물군 내에 있는 건물등의 순서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동번호는 한글을 사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3.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고 층수의 의미를 호수에 포함하려는 경우에 호수는 층수를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하도록 부여할 수 있다.

4. 하나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나누는 경우에는 원래 호수 뒤에 순차적으로 문자를 추가하여 각각의 호수로 하고, 둘 이상의 호를 하나로 합하는 경우에는 원래 호수 중 가장 낮은 번호 또는 문자를 합한 호의 호수로 부여할 수 있다.

5. 제4호의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 관련 공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원래의 호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12조(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의 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상세주소 부여 등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상세주소판 등의 교부 및 설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의 안내를 위한 상세주소판의 설치 또는 상세주소의 표기는 해당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해당 동·층·호에 직접 제작·설치한 상세주소판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세주소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등) 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

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대장은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고, 작성되거나 폐지한 도로명주소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대장의 구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로명주소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도로구간 단위로 작성하는 경우: 도로명주소총괄대장(이하 “총괄대장”이라 한다)

2. 건물번호 단위로 작성하는 경우: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이하 “개별대장”이라 한다)

② 총괄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별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총괄대장의 기재사항) ① 총괄대장은 하나의 도로구간을 단위로 하여 도로구간마다 각각 작성하고, 해당 도로구간에 종속구간이 있는 경우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총괄대장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부

가. 고유번호(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한 코드)

나. 면 번호(총괄대장 해당 면의 번호)

다. 도로명관할구역

라. 도로명(한글 도로명과 로마자로 표기한 도로명)

마. 효력 발생일 및 고시일

바. 부여 사유(영 제18조에 따른 고시 사항 중 도로명의 부여 사유)

사. 부여권자(도로명의 결정권자를 말한다)

2. 도로구간의 현황 및 이동사항

가. 도로명과 도로 구분

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 도로구간의 길이(주된구간의 길이를 말한다)

라. 기초간격(주된구간의 기초번호 간의 간격을 말한다)

마. 이동일(효력발생일을 말한다)

바. 코드 및 이동 사유(별표의 도로명주소의 이동 사유별 코드표에
따른 코드 및 이동 사유)

3. 도로구간의 현황도

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나. 도로 선형

다. 행정구역의 경계 또는 분기(分岐)된 도로구간의 현황

라. 종속구간

마. 작성일

4. 참고사항

가. 관련 도로구간 현황

- 1) 동일도로명 수
- 2) 유사도로명 수
- 3) 종속구간 수

나. 교차로 현황 및 도로명판 설치 현황

- 1) 전체 도로명판 수
- 2) 시작지점에 설치된 도로명판 수
- 3) 끝지점에 설치된 도로명판 수
- 4) 교차로 수
- 5) 도로명판이 설치된 교차로 수

다. 건물번호 부여 현황

- 1) 주된구간의 건물번호 수
- 2) 종속구간의 건물번호 수

5. 참고사항의 세부 현황

가. 동일도로명의 현황(도로명관할구역, 도로명)

나. 유사도로명의 현황(도로명관할구역, 도로명)

다. 도로명판 설치현황

- 1) 설치위치
 - 가) 건물등관할구역
 - 나) 도로명과 기초번호
 - 다) 구분(시작지점, 끝지점, 교차로)

2) 도로명판의 유형

가) 지주식(支柱式)

나) 매달식

다) 벽면부착식

3) 설치일

제17조(개별대장의 기재사항) ① 개별대장은 하나의 건물번호를 단위로 하여 건물번호마다 각각 작성한다.

② 개별대장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부

가. 고유번호(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번호 단위로 부여한 코드)

나. 면 번호(개별대장 해당 면의 번호를 말한다)

다. 건물등관할구역

라. 도로명

마. 지하 여부

바. 건물번호

사. 도로명의 부여 사유

아. 효력발생일 및 고시일

자. 관련지번

차. 부여권자(도로명의 결정권자를 말한다)

2. 도로명주소의 현황 및 이동사항

가. 건물등관할구역

나. 도로명과 건물번호(“지하” 여부를 함께 표시한다)

다. 관련 지번(동·리/지번)

라. 이동일

마. 코드 및 이동 사유(별표의 도로명주소의 이동 사유별 코드표에 따른 코드 및 이동 사유)

3. 건물등의 현황도

가. 건물등의 현황 및 주된 출입구(건물군의 표시를 포함한다)

나. 해당 도로구간·기초번호·기초간격

다. 작성일

4. 참고사항

가. 건물등의 동수(건물군을 구성하는 건물등의 수를 말한다)

나. 건물등의 이름(건축물대장상의 이름을 말하며, 없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로 확인한 이름을 말한다)

다. 등록 공공문서(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대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물등을 등록한 공부를 말하며, 미등록인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기록)

라. 국가기초구역번호

마. 상세주소의 총괄 현황(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고지한 동·층·호의 개수)

5. 관련 지번 및 참고사항의 세부 현황

가. 관련 지번 현황

- 1) 건물등관할구역
- 2) 관련 지번
- 3) 이동일 및 이동 사유

나. 건물군 현황

- 1) 일련번호
- 2) 동 이름
- 3) 이동일 및 이동 사유

다. 건물등의 이름 현황

- 1) 건물등의 이름
- 2) 이동일 및 이동사유

6. 상세주소 동별 현황

가. 전체 동수의 현황

나. 동 번호

다. 코드 및 이동 사유(별표의 도로명주소의 이동 사유별 코드표에
따른 코드 및 이동 사유)

라. 이동 일자

마. 동의 현황도

7. 상세주소 층별 현황

가. 동별 층수 현황(동 번호가 있는 경우 전체 층수를 말한다)

나. 층수(동 번호가 있는 경우 동별 층수를 말한다)

다. 코드 및 이동 사유(별표의 도로명주소의 이동 사유별 코드표에
따른 코드 및 이동 사유)

라. 이동 일자

마. 층의 현황도

8. 상세주소 호별 현황

가. 전체 호수 현황(동 번호가 있는 경우 동별 층별 호수를 말한다)

나. 호수(동 번호 층수가 있는 경우 동별 전체를 말한다)

다. 코드 및 이동 사유(별표의 도로명주소의 이동 사유별 코드표에
따른 코드 및 이동 사유)

라. 이동 일자

마. 층의 호 현황도

제18조(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방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대장을 먼저 작성하고, 작성한 총괄대
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한다.

② 총괄대장의 고유번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관리하고, 개별대
장의 고유번호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청장이 부여·관리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
역에 주된구간이 없어 총괄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총괄대
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된구간에 포함된 종속구간의 개별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된구간의 총괄대장을 관리하는 인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속구간의 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자치구의 행정구역 경계를 통과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도로구간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중복하여 총괄대장을 작성·관리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총괄대장에 기록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대장의 작성을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총괄대장을 근거로 개별대장을 작성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괄대장의 작성·관리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결정한다.

1. 관계되는 도로명관할구역이 모두 같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관계되는 도로명관할구역이 서로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⑧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도로구간 또는 도로명주소의 폐지로 인하여 해당 도로명주소대장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였을 때에는 앞면의 제명 오른쪽에 붉은 글씨로 “말소”라고 기재한다.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총괄대장의 생성·변경·말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생성(도로명주소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이 경우 총괄대장을 생성할 때 기록하는 이동사유는 별표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총괄대장을 변경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총괄대장의 변경은 행정구역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1. 다른 도로구간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
2. 도로구간의 일부가 폐지되어 고시한 경우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유로 도로구간을 변경하고 고시한 경우

4. 기초번호가 변경되어 고시한 경우

5. 도로명이 변경되어 고시한 경우

6. 도로명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고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 폐지의 고시일(도로명주소의 효력 발생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총괄대장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대장이 말소되면 개별대장은 모두 말소된 것으로 본다.

1. 도로가 폐지된 경우

2. 다른 도로구간과 합병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괄대장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때의 이동 사유는 별표와 같다.

⑤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도로에 대하여 총괄대장을 말소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접한 도로구간이 걸쳐 있는 도로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하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0조(개별대장의 생성·변경·말소)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생성한다.

이 경우 개별대장에 기록하는 이동사유는 별표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개별대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개별대장의 변경은 행정구역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로 인한 개별대장의 변경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일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건물번호가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2.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 변경으로 건물번호가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3. 도로명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4. 건물등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사유로 개별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개별대장을 변경할 때의 이동 사유는 별표와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폐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건물번호의 폐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개별대장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대장을 말소할 때의 이동 사유는 별표와 같다.

제21조(도로명주소대장의 정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확인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정정 신청서에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정이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도로명주소대장을 정정할 때의 이동사유는 별표와 같다.

제22조(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의 발급 및 열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거나 열람(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을 보게 하거나 도로명주소대장의 사본을 출력하여 주는 방법을 말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총괄대장 또는 개별대장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받은 도로명주소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폐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1. 발급받으려는 경우: 1건당 500원. 이 경우 출력물이 1건당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을 가산한다.

2. 열람하려는 경우: 1건당 300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도로명주소대장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3조(주소의 일괄정정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정정신고서 1부.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정정 신청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본문의 정정신고서와 주소 일괄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라 기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 1부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된 주소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른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 신고서 1부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등록대장의 주소 정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
6.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자 등록부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7.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주

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대장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무소·대표자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청서 각 1부

9.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9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장·공장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9조·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1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11.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 주사업장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1부.

13. 영 제36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일괄정정의 요청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주소일괄정정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24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촉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의 세부기준) ① 영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인 주거용 건물등
2.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용 건물등
3. 상업용 건물등

4. 공업용 건물등

5. 그 밖의 용도의 건물등

② 영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단위로 구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단위로 세분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지점번호의 검증) ① 국가지점번호의 검증을 위한 기준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기준점을 사용한다.

② 국가지점번호검증자가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현장검증을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종류 및 위치

2. 해당 시설물의 위치에 맞는 국가지점번호의 산출

③ 현장검증을 통한 국가지점번호의 오차 허용 범위는 국가지점번호 표기방법에 맞는 현장의 직각좌표 값과 검증한 직각좌표 값이 2미터 이내로 한다.

④ 국가지점번호검증자는 영 제48조제5항에 따른 서면검증을 통하여 표기 또는 설치한 국가지점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지점번호의 검증 신청 등)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검증 신청서를 국가지점번호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점번호검증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치 예정 위치에서의 국가지점번호 중복 설치 및 표기 여부
2. 영 제45조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의 적정성 여부

③ 영 제48조제3항 및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을 사용한다.

제28조(사물번호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① 건물등의 외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변경할 때의 세부기준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된 출입구”는 “기준점”으로, “건물번호”는 “사물번호”로, “건물등”은 “시설물”로 한다.

② 건물등의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사물번호를 부여·변경할 때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수의 의미를 사물번호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층수를 나타내는 아라비아숫자로 시작하도록 부여할 수 있다.
2. 동일한 유형의 시설물이 하나의 기초간격 내에 있는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제29조(사물주소의 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52조제3항 및 제53조제5항·제7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고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4호의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고유번호

2. 시설물의 유형

3. 사물주소

4. 주소구분[대표주소(주된 기준점에 부여한 주소) 또는 대체주소(주된 기준점이 아닌 기준점에 부여한 주소)를 말한다]

5. 시설물의 명칭

6. 이동일

7. 이동사유(부여·변경·정정·폐지를 말한다)

8. 신청 또는 직권에 따른 구분

9. 설치자·관리자 또는 신청인

10. 사물주소판의 설치 및 철거 현황

11. 종전의 사물주소(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폐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에 설치 계획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설계도서에 사물주소판의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을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하거나 재교부하였을 때에는 영 제54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사물주소판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①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광고의 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른 광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광고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 신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32조(주소정보 제공 등)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의 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의 관리는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한다.

제33조(주소정보시설의 비용 부담) ① 법 제26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3항·제4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 부과는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

② 영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③ 영 제62조제9항에 따른 비용 부과는 별지 제35호서식으로 한다.

④ 영 제62조제12항에 따른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 비용 부과는 별지 제36호 서식으로 한다.

제34조(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주소정보의 설정·부여·변경·폐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폐지한다.

1. 도로명주소대장규칙
2.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

도로명주소대장의 이동 사유별 코드표(제15조제2항제2호바목,
제16조제2항제2호마목 및 제5호가목부터 다목 관련)

코드	이동 사유	명칭
01	도로명 부여	도로명 부여
02	대로[로(路)·길]에서 분할되어 도로명 부여	도로명 부여
03	대로[로(路)·길]의 도로명 변경	도로명 변경
11	대로[로(路)·길]가 합병되어 도로구간 변경	도로구간 변경
12	도로구간 변경	도로구간 변경
21	기초번호 변경	기초번호 변경
31	건물번호 부여	건물번호 부여
32	도로구간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건물번호 변경
33	기초번호 변경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건물번호 변경
34	건물번호 변경	건물번호 변경
41	도로명 관할구역 변경	도로명 관할구역 변경
42	건물등 관할구역 변경	건물등 관할구역 변경
51	관련 지번 변경	관련 지번 변경
61	대로[로(路)·길]에 합병되어 도로구간 폐지	도로구간 폐지
62	용도폐지에 따른 도로구간 폐지	도로구간 폐지
63	건물번호 폐지	건물번호 폐지
71	기재내용 정정	기재내용 정정
81	상세주소 부여	상세주소 부여
82	상세주소 변경(분할)	상세주소 변경
83	상세주소 변경(합병)	상세주소 변경
84	상세주소 폐지	상세주소 폐지
85	상세주소 기재내용 정정	기재내용 정정

도로명 부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8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도로구간	시작지점		
	끝지점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합니다.			
신청사유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3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도로구간 현황도 1부	수수료 없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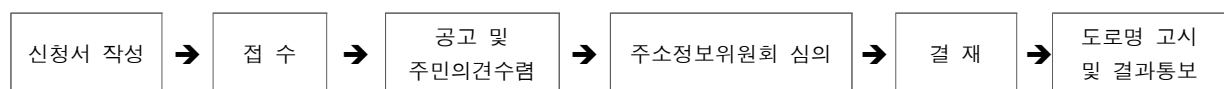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도로명 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도로명	현행		
	변경 희망안 (예비 도로명)	1순위	
		사유	
		2순위	
	사유		
도로구간	※ 하나의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일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신청 사유			
도로명주소 사용자 수			
변경 동의자 수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1부 2. 도로구간 현황도 1부(도로구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수수료 없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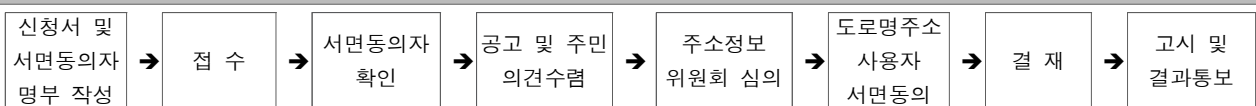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

(뒤쪽)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 부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지역의 명칭		
	도로구간(1)	시작지점	※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구간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끝지점	
	도로구간(2)	시작지점	
		끝지점	
	도로구간(3)	시작지점	
끝지점			
신청사유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첨부서류	도로구간 현황도	수수료 없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시·도(도로명주소 담당부서)

명에도로명 부여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120g/㎡]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부여 · 변경 · 폐지의 사유 :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건물번호판의 교부 여부	[]교부	[]미교부
	※ 도로별 구분기준(대로·로급, 길급)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미교부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신청서 또는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같은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신축·증축·멸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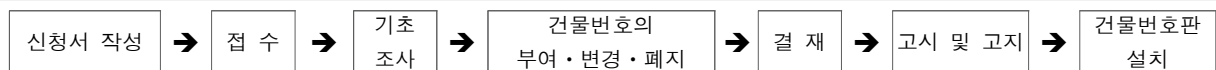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건물 등의
소유자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

(뒤쪽)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크기	건물번호 글자의 크기(가로×세로)	
		건물번호판의 크기(가로×세로) ※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규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재질		
	부착위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 계획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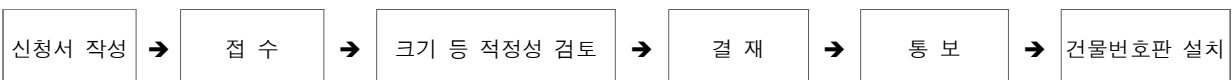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건물번호 [] 부여 [] 변경 신청서 [] 폐지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지역의 명칭	도로명	
	건물번호	※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부여·변경·폐지의 사유 :		
	건물등의 이름과 용도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번호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건물등의 배치도 1부.	수수료 없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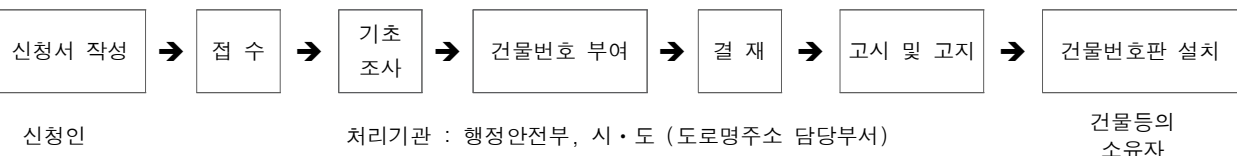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건물등의 소유자 등은 건물번호의 부여를 고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시·도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건물등관할구역			
	도 로 명		신청사유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건물번호			
	※ 도로별 구분기준(대로·로급, 길급)에 따라 교부 수수료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건물번호판 교부	→	건물번호판 설치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건물번호판 (재)교부 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120g/m²]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00.0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여
상세주소 [] 변경 신청서
[] 폐지**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①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② 신청 사유	임대·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임대·임차하려는 건물등 [], 기 타 []		
③ 신청인 구분	소유자 [], 임차인(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 []), 대리인 []		
④ 신청하려는 건물 등의 주소	※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⑤ 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	동 번호 ()개, 층수 ()개, 호수 ()개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⑥ 상세주소 부여·변경에 따른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주소정정(신청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신청에 동의합니다.

* 주소정정에 동의하는 대상자가 많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⑦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 동의서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건물 등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⑨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 ② 신청 사유: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는 이유를 해당하는 칸에 'V' 로 표시합니다.
- ③ 신청인 구분: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임차인 및 대리인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 'V' 로 표시합니다.
- ④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 'V' 로 표시합니다.
- ⑤ 상세주소의 부여 등을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 ⑥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상세주소의 부여 등으로 주민등록표의 주소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기재합니다.
- ⑦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 동의서: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기재합니다.
-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기재합니다.
- ⑨ 상세주소 부여 등에 따른 결과를 공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통보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칸에 'V' 로 표시합니다.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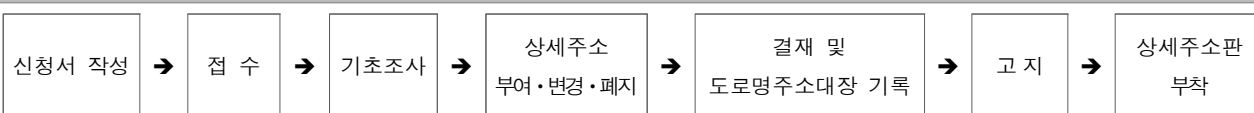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동 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 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 를 붙여 사용(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 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한글의 “가나다라” 를 순차적으로 붙인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소유자 또는
임차인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⑦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신청인: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 ② 신청 사유: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려는 이유를 해당하는 칸에 'V' 로 표시합니다.
- ③ 신청인 구분: 신청인이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임차인 및 대리인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 'V' 로 표시합니다.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해당하는 칸에 'V' 로 표시합니다.
- ④ 상세주소의 부여 등을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 ⑤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 동의서: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을 임차인이 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건물등의 소유자가 기재합니다.
-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기재합니다.
- ⑦ 상세주소 부여 등에 따른 결과를 공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통보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칸에 'V' 로 표시합니다.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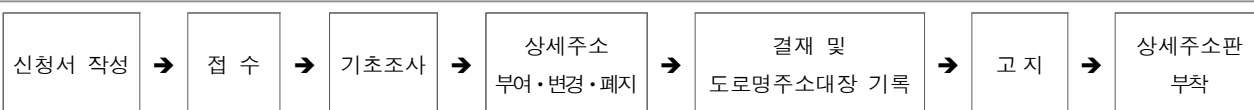
※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동 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 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 를 붙여 사용(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 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한글의 “가나다라” 를 순차적으로 붙인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및 시·도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소유자 또는
임차인

(앞쪽)

도로명주소 총괄대장										
고유번호									면 번호	
도로명 관할구역				도 로 명	(로마자 :)				효력 발생일 (고시일)	
부여사유									부여권자	
도로구간 현황 및 이동 사항					도로구간 현황도					
도 로 명 (도로 구분)	시작지점 기초번호	도로구간 길이(m)		이 동 일		작성일				
	끝지점 기초번호	기초번호간격(m)		코드 및 이동 사유						
					※ 이 도면은 주소에 사용되는 도로구간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관련 도로구간 현황			교차로 및 도로명판 설치 현황					건물번호 부여 현황	
	동일 도로명 수	유사 도로명 수	종속구간 수	전체 도로명판 수	시작지점 설치 도로명판 수	끝지점 설치 도로명판 수	교차로 수	도로명판이 설치된 교차로 수	주된구간 건물번호 수	종속구간 건물번호 수

(뒤쪽)

도로명 관할구역		도 로 명							
참고사항의 세부 현황									
동일도로명 현황		유사도로명 현황		도로명판 설치현황					
도로명 관할구역	도로명	도로명 관할구역	도로명	설치 위치			도로명판의 유형	설치일	
				건물등 관할구역	도로명	구분		최초 설치일	재설치일 (재설치 여부)
					기초번호				

297mm×210mm[백상지(120g/㎡)]

고 유 번 호		도로명주소 개별대장				면 번호		/	
건물등관할구역		도 로 명		지하 여부		건물번호			
도로명의 부여사유		효력 발생일 (고시일)		관련지번		부여권자			
도로명주소 현황 및 이동 사항					건물등의 현황도				
건물등 관할구역	도로명	관련 지번 (동·리/지번)	이동일			작성일			
	건물번호		코드 및 이동 사유						
					※ 이 도면은 주소에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건물등의 동수	건물등의 이름	등록 공공문서	국가기초구역	상세주소 총괄 현황				
					동의 수	층의 수	호의 수		

					면 번호	/	
건물등관할구역			도 로 명		지하 여부	건물번호	
관련 지번 및 참고사항의 세부 현황							
관련 지번 현황			건물군 현황			건물등의 이름 현황	
건물등관할구역	관련 지번	이동일 및 이동 사유	일련번호	동이름	이동일 및 이동 사유	건물등의 이름	이동일 및 이동 사유

(5쪽 중 제3쪽)

					면 번호	/	
건물등관할구역		도 로 명		지하 여부		건물번호	
상세주소 동별 현황							
전체 동수의 현황					동의 현황도		
동번호	코드 및 이동 사유	이동 일자		※ 이 도면은 건물등에 부여된 상세주소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97mm×210mm[백상지(120g/㎡)]

(5쪽 중 제4쪽)

					면 번호	/	
건물등관할구역		도 로 명		지하 여부		건물번호	
상세주소 층별 현황							
전체 층수의 현황					층의 현황도		
층수(동번호 포함)	코드 및 이동 사유		이동 일자		※ 이 도면은 건물등에 부여된 상세주소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97mm×210mm[백상지(120g/㎡)]

(5쪽 중 제5쪽)

					면 번호	/	
건물등관할구역		도 로 명		지하 여부		건물번호	
상세주소 호별 현황							
전체 호수의 현황					층의 호 현황도		
호수(동번호와 층수 포함)	코드 및 이동 사유	이동 일자		※ 이 도면은 건물등에 부여된 상세주소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97mm×210mm[백상지(120g/㎡)]

도로명주소 폐지대장

[illegible]

도로명주소 기재내용 [] 총괄대장
[] 개별대장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는 건물등의 현황			
건물등관할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동 층 호

정 정 항 목	(기재내용 정정) 전 내용	(기재내용 정정) 후 내용	사 유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도로명주소대장의 기재내용 중 정정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기재내용 정정	→	결재	→	결과 통보
--------	---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도로명주소대장 [] 등본발급 신청서 [] 열 람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일			신 청 종 목 (신 청 수 량)	수수료 (뒤쪽 참조)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하는 도로명주소대장의 종류: ① 총괄대장 [] ② 개별대장 [] ③ 폐지된 총괄대장 [] ④ 폐지된 개별대장 []	
	전화번호			
신청대상	도로명주소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 수 료 ※ 출력물이 20장을 초과하면 장당 50원이 가산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구분	종 류	단 위	수수료		시·군·구(민원서류 발급부서), 읍·면·동·출장소
등본 발급	도로명주소대장 (총괄대장/개별대장)	건 당	500원	① 신청서 제출	② 접 수 ③ 대 장 확 인 ④ 결 재 ⑤ 등 본 발급(열람)
열람	도로명주소대장	1. 총괄대장 2. 개별대장	300원	⑥ 교 부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4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 내용	변경전 주소			
	변경후 주소			
	[일괄정정 공부의 목록]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의 기재하는 소유자·공유자의 주소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등록관리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나 대표자의 주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소의 일괄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한 문서의 변경전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대상여부 확인	→	대행신청	→	공부의 주소정정	→	주소 일괄정정 결과 통보	→	통보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하여야 할 서류]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전입신고서 또는 정정신고서 1부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부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라 기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서 1부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된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른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 신고서 1부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등록대장의 주소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1부
6.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자 등록부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7.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1부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대장 및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무소대표자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청서 각 1부
9.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9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장·공장의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9조·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1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11.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식품 영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1부.
13. 영 제37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부상의 주소: 해당 공부의 주소를 정정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 목 주소 일괄정정 대행 신청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귀 기관이 관리하는 공부 등에 작성·등록된 주소에 대하여 일괄정정을 대행하여 신청하오니,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1부.

2. 주소 일괄정정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 1부.

3. 도로명주소대장(또는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 현황) 1부.

4. 주소 일괄정정 처리결과 통보서(서식) 1부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주소 일괄정정 대상 공부의 처리결과 통보서

일련 번호	신청인	공부(문서) 이름	관리기관장	처 리 내 용		주소정정의 사유	변경일
				성명(법인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주소 일괄정정 관리대장

일련 번호	대상공부 현황		신청인		신청일	완료일 (결과통보일)	비고
	공부 명칭	관리기관장	성 명	주소변경 현황			
				변경전:			
				변경 후:			
				변경전:			
				변경 후:			
				변경전:			
				변경 후:			
				변경전:			
				변경 후:			
				변경전:			
				변경 후:			
				변경전:			
				변경 후:			
				변경전:			
				변경 후:			
				변경전:			
				변경 후:			
				변경전:			
				변경 후:			
				변경전:			
				변경 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촉탁서

※ 개인(자연인)의 경우 아래 서식을 사용합니다.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년 월 일
등기의 목적	
변경사항	
촉탁근거	「도로명주소법」 제21조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제

위 등기촉탁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지방법원 등기소장 귀하

첨부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1통 및 도로명주소대장
------	-----------------------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촉탁 관리대장

등지구분	표시사항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	성명 (법인명)	대상자 주소	등기촉탁 연월일	등기필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연월일	신청인 통지연월일	반송 연월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국가지점번호 검증 신청서

(3쪽 중 1쪽)

신청인	기관의 명칭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주소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신청내용	대표 소재지		신청 수량	
	※ 검증을 신청하는 시설물 위치 현황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지점번호검증자 귀하

첨부서류	1. 검증신청 시설물 목록표. 2. 시설물 현황표.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장검증 및 결과통보
신청인		국가지점번호검증자		신청인
				국가지점번호검증자

210mm×297mm[백상지 80g/㎡]

국가지점번호 검증 신청 시설물 목록표

(3쪽 중 2쪽)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80g/㎡)]

국가지점번호 검증 시설물 현황표

(3쪽 중 3쪽)

연번			
	1. 신청 시설물 현황(신청기관)	2. 현장검증 사진(검증기관)	3. 설치 결과(신청기관)
※ 유의사항 1. 사진 촬영 시 시설물 번호 및 주변 환경 등이 잘 나오도록 촬영 2. 각 사진은 서로 위치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두 유사한 각도로 촬영			

297mm×210mm[백상지(80g/㎡)]

국가지점번호 검증결과 통보서

국가지점번호			시설물 종류		
신청기관명					
검 증 결 과	좌표 및 경위도	X		경도	
		Y		위도	
		Z		높이	
		* 투영법: T.M(축척계수 0.9996)			
		* 원점의 경위도: 동경 127° 30' 00.000" . 북위 38° 00' 00.000"			
* 투영원점의 가산수치: X(N) 2,000,000 Y(E) 1,000,000					
* 타원체: 세계측지계(GRS80)를 적용하며 타원체의 장반경 6,378,137m. 편평률 298.25722210분의 1					
설치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 공유수면매립지 등에 따라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근경사진)		(약도)	
		(원경사진)			
* 본 검증결과 통보서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증자 소속, 자격, 성명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제5항·제7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검증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가지점번호검증자 (인)

사물주소 관리대장

고유 번호	시설물 유형	사물주소	주소구분	시설물의 명칭	이동일	이동사유	신청 또는 직권의 구분	설치자/관리자 (신청인)	사물주소판 설치 및 철거 여부 현황	종전의 사물주소	비고

[] 부여
사물주소 [] 변경 신청서
[] 폐지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행정구역		
시설물 위치 ※ 사물번호는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건물등의 안에 있는 경우	도로명, 건물번호 및 사물번호
	건물등의 밖에 있는 경우	도로명 및 사물번호
시설물의 유형		
시설물의 명칭		
부여·변경·폐지 사유		
사물주소판	[]교부	[]미교부
	※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 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물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2. 시설물의 설치계획서(설치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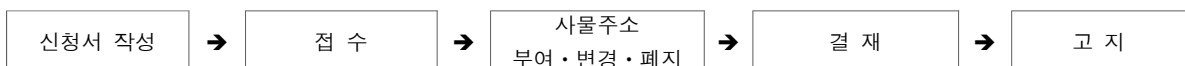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려는 사물주소	행정구역		
	시설물 위치	건물등의 안에 있는 경우	도로명, 건물번호 및 사물번호:
		건물등의 밖에 있는 경우	도로명 및 사물번호:
	시설물의 유형		
자율형 사물주소판	크기	사물주소판 글자의 크기(가로×세로)	
		사물주소판의 크기(가로×세로) ※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규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재질		
	부착위치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형 사물주소판의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 계획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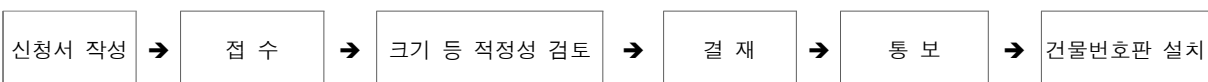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행정구역		
	도 로 명	신청사유	[] 훼손 [] 잃어버림 [] 그 밖의 사유
	건물번호		
	사물번호		
	※ 사물주소판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 · 군 ·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사물주소판 교부

→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신청인

사물주소판 (재)교부 대장

[illegible]

[] 주소정보안내도 광고 신청서

[] 주소정보안내판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0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하는 광고의 내용	
광고 기간	
수행 능력 * 신청서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첨부합니다.	인력구성
	자산규모
	광고실적
	기타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시행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1.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계획서 1부 2.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심의 및 결재



통보



계약



광고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

일련 번호	광고 사항				신 청 인		신청일	결과 통보일	계약(광고기간)		공고일	비고
	종류	규격	수량	위치	성명 (법인명)	주 소			체결일	종료일		

297mm×210mm[백상지 120g/㎡]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주소			

신청내용	요청 자료 목록
	이용목적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 및 보안 대책
	제공 방법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제공받을 자료의 보호대책이 포함된 보안 계획서 1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전자적 방법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그 결과를 다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해 통보하는데 동의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 ② 전자우편 [] ③ 팩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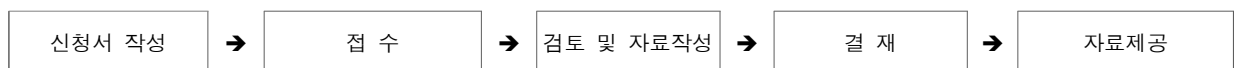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공받은 자료의 보안에 관한 사항

본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자료의 보호 및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소정보 제공 및 관리 대장

일련 번호	제 공 요 청 사 항							제 공 일 자 및 제 공 여 부			사 후 관 리		
	요청일	주소정보 목록	이용목적	보안대책	제공방법	신청인 (단체명)	연락처	제공일	제공조건	수수료 (원)	점검일 (점검자)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고

297mm×210mm[백상지 120g/㎡]

주소정보시설 정비 비용 납부서

제 호 납부고지서		
주소정보시설 종류		
주소정보시설 위치		
납 부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정 비 비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정보시설 정비비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영수필통지서 (시·군·구 통보용)		
주소정보시설 종류		
주소정보시설 위치		
납 부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정 비 비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주소정보시설 종류		
주소정보시설 위치		
납 부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정 비 비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 우체국		

297mm×210mm[백상지(80g/㎡)]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인가내용	사업명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가일

이의신청 내용	※ 별첨 가능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2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 수정계획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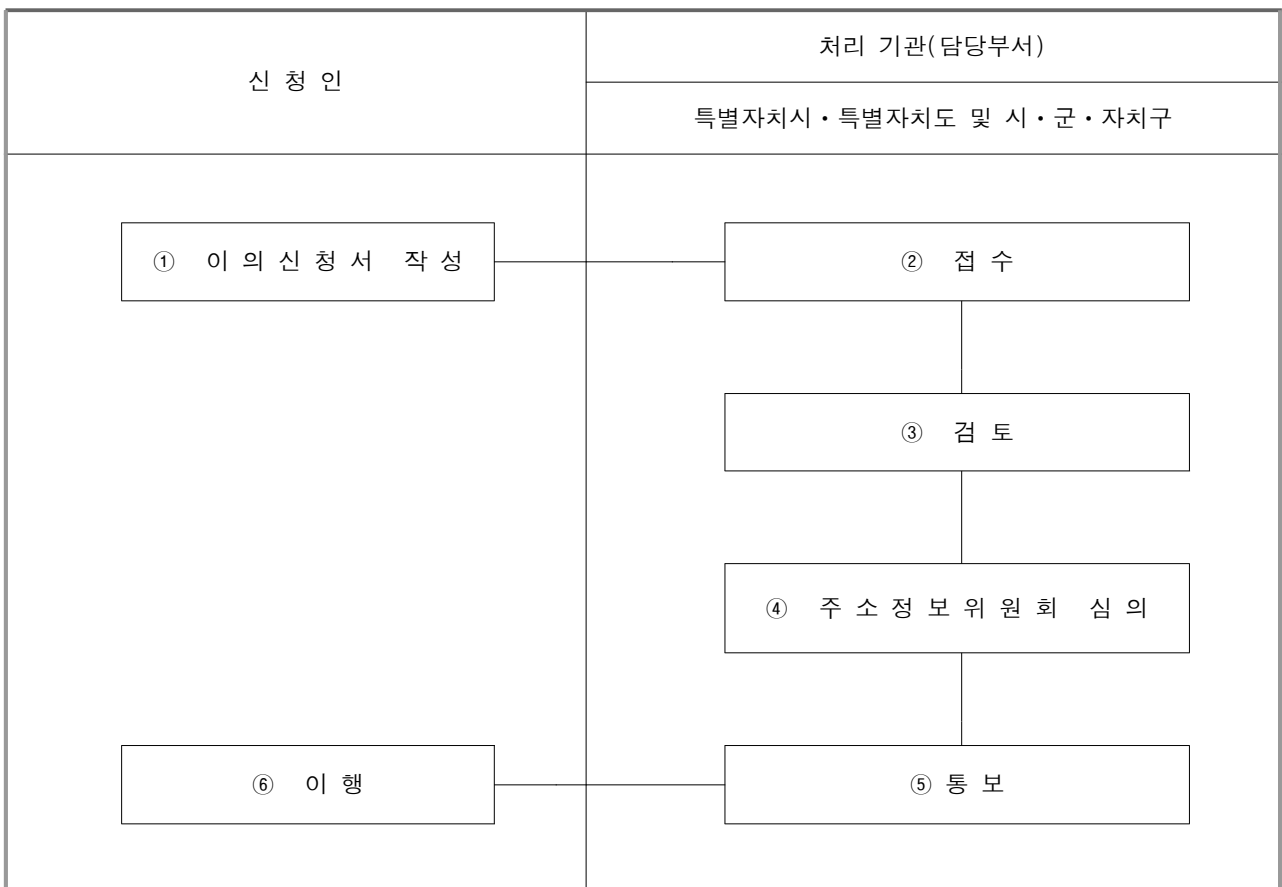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비 납부서

제 호 납부고지서		
사 업 명		
위 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납 부 의무자	성명 (법인명)	
	주 소	
설 치 비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 정보시설 설치비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 기한 내에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영수필통지서 (시·군·구 통보용)		
사 업 명		
위 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납 부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설 치 비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사 업 명		
위 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납 부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설 치 비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개발사업지역 주소정보시설 설치 이행 통보 및 설치비 납부서

제 호 납부고지서		
사 업 명		
위 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납 부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설 치 비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도로명주소법」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설치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제 호 영수필통지서 (시·군·구 통보용)		
사 업 명		
위 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납 부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설 치 비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 호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사 업 명		
위 치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납 부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설 치 비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앞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 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 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 등에 출 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 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 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illegible]